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〈유형③ 미술콘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〉 미술콘텐츠 제공자 모집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**우수 미술콘텐츠와 지역 전시공간의 매칭 지원**으로 유통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**<유형③미술콘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>** 사업을 추진합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**미술콘텐츠 제공자**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※ 본 지원사업은 매칭 지원으로 "미술콘텐츠 제공자"를 선정 후, 전시공간 매칭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
사업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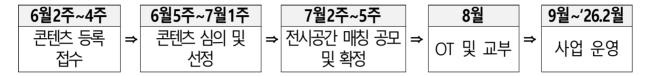
- (공모명) 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< 유형® 미술콘텐츠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>
- (사업기간) 2025년 8월 ~ 2026년 2월 (총 7개월)
- ㅇ (지원규모) 미술콘텐츠 1개당 최소 3천~최대 5천만원 (최대 2개 매칭 가능)
- (사업대상)
 - 미술콘텐츠 제공자 : 공·사립미술관, 갤러리, 전시기획사 등

구분	역할	필수/권장/우대 조건
미술콘텐츠 제공자	- 미술콘텐츠 제공 - 전시기획, 설치, 철수 - 부대프로그램 운영 - 전시 홍보	- (필수)미술콘텐츠 전시기획·설치·철수 - (필수)최소 3천만원~최대 5천만원 규모 미술콘텐츠 제공 - (필수)총괄기획자 선임 - (필수)미술콘텐츠비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- (필수)전시해설프로그램 최소 20회 이상 운영 - (필수)용역 결과보고서 - (권장)지역예술인 연계프로그램 운영

- 전시공간 제공자 : 문예회관 등의 공공·민간 지역 전시공간

구분	역할	필수/권장/우대 조건
전시공간 제공자	- e나라도움 공모운영 - 공간 제공/관리 - 전시장 지킴이 운영 - 전시 홍보	- (필수)e나라도움 운용 가능 - (필수)현금성 자부담 10% 편성 및 정산 - (필수)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보유 - (필수)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실내 전시공간* *최소 50평(약 165㎡)~최대 100평(약 350㎡) *지원신청금 6천만원 이하 50평 이상, 초과 시 100평 *단, 문예회관은 금액무관 최소 50평 이상 - (필수)지원금 대비 80% 이하로 콘텐츠비 편성 및 지급 - (필수)설치·철수휴관일 제외 30일 이상 전시 운영 - (권장)유료전시 - (우대)문예회관 지원 시 선발우대

- (사업내용)
- (①단계) 미술콘텐츠 제공자 모집 → 심의/선정 → 선정된 미술콘텐츠 공개
 - → 콘텐츠 유치를 희망하는 전시공간 모집 → 매칭 → 경비 지원
- (②단계) 계약체결(미술콘텐츠+전시공간) → (세금)계산서 발행(미술콘텐츠)
 - → 용역비 지급(전시공간) → 전시운영(미술콘텐츠+전시공간)
 - → 용역비 결과보고(미술콘텐츠) → 최종정산(전시공간)
- o (추진일정) *추진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

▲(참고) 운영구조 (e나라도움 사업신청/집행/정산은 '전시공간'에서 진행)

전시공간 제공자

미술콘텐츠 제공자

미술콘텐츠 등록

등록콘텐츠 심의 및 선정

미술콘텐츠 공개 및 전시공간 공모

미술콘텐츠 유치 희망 전시공간 지원신청서 작성

e나라도움 공모 신청 및 매칭

최종 매칭결과 발표

e나라도움 사업등록/교부신청

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

전시 콘텐츠비(용역비) 지급

전시 운영 및 홍보

용역비 정산/결과보고 제출

e나라도움 사업 정산/결과보고 제출

Ⅱ □ 미술콘텐츠 제공자 모집 내용

- (모집기간) 공고일로부터~2025년 6월 25일(수) 17:00까지
- ㅇ (모집대상) 미술콘텐츠 제공자

<미술콘텐츠 제공자>

- ▲ 공·사립미술관, 갤러리, 전시기획사 등 미술콘텐츠 1개 이상 ~ 4개 이하 보유한 단체
- ▲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단체

<미술콘텐츠 등록 조건>

- ▲ 최소 3천만원 이상~최대 5천만원 이하 규모의 미술콘텐츠만 지원 가능
- ▲ 1번 이상의 개최 이력이 있는 미술콘텐츠만 지원 가능
- ▲ 사업기간 내 30일(설치/철수/휴관 제외한 순수개최일) 이상 개최가능한 미술콘텐츠 지원 가능
- ▲ 최소 1개 ~ 최대 4개 미술콘텐츠 등록 가능
- ▲ 전시 큐레이팅을 위한 총괄기획자 선임 필수
- ▲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전시공간 제공자로 중복 지원 불가

<권장조건> (권장) 지역예술인 연계프로그램 운영

<(참고)매칭>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최대 2개의 각기 다른 전시공간 제공자와 매칭 가능

<등록할 수 없는 미술콘텐츠>

- ▲ 레플리카전, 체험전, 공모전, 수상전, 회원전, 협회전, 교류전, 연례전, 학위 청구전, 아트페어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한 전시
- ▲ 지역 순회전시에 부적합하고,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전시

<그 외 지원 불가사항>

- ▲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미술관/박물관
- ▲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
- ▲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
- ▲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
- ▲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▲ 동 사업으로 보조금, 지방보조금,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
- ▲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
- ▲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
- ▲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
- ▲ 기 선정된 지원사업의 정산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
- ▲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 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
- ▲ 기재부「보조금법」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
- ▲ 문체부「국고보조금 관리지침」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
- ▲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로 처벌된 단체 및 개인
- ▲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: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단, 의결과정 관여 없이 단 순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, 기간 경과 시 제외
- ▲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이 (지원내용) 1개 미술콘텐츠당 최소 3천만원~최대 5천만원 이하
- ※ 지원 금액 범위 내 전시 개최경비 및 일반관리비, 이윤, 부가세 등 일체 포함
- ※ 추후 전시공간과의 매칭 결정 이후 전시공간을 통해 용역비 형태로 지급 예정
- ※ 콘텐츠 선정에 탈락하거나, 전시공간과 매칭되지 않은 경우 콘텐츠비는 지급되지 않음

<편성항목>					
목 세목		지원항목(국고보조금)			
		• 운영인력 사례비 (총괄기획자, 큐레이터 등)			
	일반수용비(01)	* 산출총액의 15%를 초과할 수 없음			
① 운영비(210)		• 전문인력 사례비 (작가, 평론가, 강사 등) * 내부인력 지급 불가			
		• 재료비 (부대프로그램 등)			
	공공요금및제세(02)	2) · 보험료 (전시장, 행사, 작품, 관람객 등)			
	임차료(07)	• 임차료 (전시물품 등) * 공간임차료 책정 불가			
	일반용역비(14)	• 대행 용역비 (연출, 설치, 철수, 홍보, 도록 등)			
② 여비(220) 국내여비(01)		• 일식비, 교통비 * 숙박비 책정 불가			
③ 일반관리비		·기타 간접경비 (①+② 합계액의 5% 이내)			
④ 이윤		• 이윤 (①+②+③ 합계액의 8% 이내)			
⑤ 부가가치세		·①+②+③+④ 합계액의 10% (면세사업장은 부가세 X)			

<지원 불가항목>		
선정단체/기업 경상비 •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 등		
자본적 경비	자본적 경비 •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등	
업무추진비 • 간담회 등을 위한 식음료비 등		
기타	• 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	

○ (의무사항)

- 매칭된 지역 전시공간에서 전시기획, 공간연출, 작품설치 및 철수
- 매칭된 지역 전시공간에서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
- 매칭된 컨텐츠의 전시 홍보
-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계약 시 가입신고
-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홍보, 교육, 조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
- 사업 관련 홍보물 등에 후원표기(문체부, 예술경영지원센터 순)
- 전시 종료 후 용역 결과(정산)보고서 제출
- ※전시장 지킴이 운영은 전시공간 제공자가 부담

Ⅲ 미술콘텐츠 등록·접수

- (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~2025년 6월 25일(수) 17:00까지
- (접수방법) 이메일 제출, kimth@kric.com
- (제출서류) *우편, 방문 접수 불가

순번	제출서류	형식
1	• 양식 미술콘텐츠 등록신청서	HWP
2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PDF
3	• 양식[붙임1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	PDF
4	• 양식[붙임2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	PDF
5	• 양식 [붙임3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	PDF
6	• 양식 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PDF
7	• 양식[붙임5]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	PDF

○ (유의사항 - 매칭 조건)
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최대 2개의 각기 다른 전시공간 제공자와 매칭 가능
- 전시공간 제공자는 최대 2개의 각기 다른 미술콘텐츠 매칭 가능
- 전시공간과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중복 지원 불가하며, 한 가지 역할만 가능
- 동일 지역의 전시공간과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매칭 불가

○ (유의사항 - 등록)

- 제출서류 누락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전시공간으로 중복 지원 불가
- 미술콘텐츠 제공자의 소재지(시/군)에 있는 전시공간과 매칭 불가
- 미술콘텐츠가 실제 운영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 제외함
- 미술콘텐츠 제공자가 제출한 예산편성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하게 편성되었을 경우 심의를 통해 감액될 수 있음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전시공간과 콘텐츠비용 외 기타 인적:물적 거래를 할 수 없음
- 제출한 미술콘텐츠는 심의 이후 전시공간 공모를 위해 웹페이지로 제작되며,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, 누리집에 공개된 연락처로 전시공간의 매칭문의가 있을 수 있음
- 공개(선정)된 미술콘텐츠에 매칭을 희망하는 전시공간이 없거나,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음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, 휴·폐업 시 사업에서 제외함
- 제출한 미술콘텐츠는 저작권-특허권-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-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제외함

Ⅳ 심의 및 선정

- ㅇ (심의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종합심의
- o (심의일정) 2025년 6월 5주 ~ 7월 1주

(6월 5주) 행정심의	(7월 1주) 종합심의	(7월 1주) 최종선정
서류/조건 등 결격확인	미술콘텐츠 선발 심의(서면)	최종 선정콘텐츠 발표

○ (심의기준)

심의지표	비중	내용
미술콘텐츠의 구체성·타당성	40%	 전시 기획 의도, 부대행사 기획, 홍보 등 제공하고자 하는 미술콘텐츠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의 주제, 작품작가 등의 지역 유통 시의성 사업 성과 기대도 및 지역 파급효과
신청주체의 역량 30%		- 신청주체 및 총괄기획자의 전문성 - 전시 운영인력의 적절성 - 전시실적 및 예술현장 기여도
예산편성의 적절성 30%		- 경비 지원 범위 내에서의 예산 편성 및 산출내역 적절성

Ⅴ 문의처

- (서류제출 및 관리사무국)
 - (이메일) <u>kimth@kric.com</u> / (전화) 02-6009-2750
- ※ 문의 가능시간 : 평일(월~금) 10시~17시, (점심 12시30분~1시30분)

참고

공모요강 개념별 정의 ※신청서 작성 전 필독

• (미술콘텐츠)

- 장르 무관 시각예술 작품으로 구성된 콘텐츠이며, 콘텐츠는 기개최 전시, 소장품 큐레이션 등으로 구분함.
- 단, 미술콘텐츠 제외사항으로는 레플리카전, 체험전, 공모전, 수상전, 회원전, 협회전, 교류전, 연례전, 학위 청구전, 아트페어 등과 지역 순회전시에 부적합하거나 선정적인 전시 등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 운 전시 등이 있으며, 콘텐츠에서 제외함.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최대 2개의 각기 다른 전시공간 제공자와 매칭 가능

• (전시공간)

- 전시공간은 실내를 기준으로 함
- 전시장소는 매칭을 희망하는 미술콘텐츠 제공자의 소재지역(시/군 기준) 외 지역에서 개최 가능하며, 국·공·사립 미술관, 문예회관, 복합문화공간 등 모두 가능
- 공간은 최소 50평(약 165m²) ~ 최대 100평(약 350m²)이며, 100평 초과도 가능
- 단, 지원신청금(국고보조금 기준)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시공간 규모 최소조건은 50평(약 165m²) 이 상이며, 초과의 경우 최소 100평(약 350m²) 이상 규모여야 함
- 단, 문예회관은 금액 무관 최소 50평(165m²)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, 우대 선발함
- 전시공간 제외사항으로는 로비, 복도 등의 공간 및 그 외 미술콘텐츠의 운송·파손·보안 등이 우려되는 공간 등이 있으며, 전시공간에서 제외함.
- 전시공간 제공자는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매칭(계약) 이후 사업비 내에서 80% 이하로 콘텐츠비용(최소 3천만원~최대 5천만원)을 산정하고, 미술콘텐츠 제공자에게 용역비로 지급하여야 하며,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전시공간 제공자는 최대 2개의 각기 다른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매칭 가능

※ 전시공간 제공자는 최대 2개의 각기 다른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매칭 가능

예1) 지원금 5,000만원 신청, 자부담 500만원

- → 콘텐츠비 4,000만원(80%)까지 편성 가능, 전시공간 규모 최소 50평 이상
- → 예) 4,000만원 이하의 미술콘텐츠 총 1개 매칭 가능

예2) 지원금 1억원 신청, 자부담 1,000만원

- → 콘텐츠비 8,000만원(80%)까지 편성 가능, 전시공간 규모 최소 100평 이상
- → 예) 각 5.000만원, 3.000만원 미술콘텐츠 총 2개까지 매칭 가능 (1개도 가능)

• (매칭)

- 심의를 통해 선정된 미술콘텐츠를 중심으로, 콘텐츠 유치를 희망하는 전시공간이 매칭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술콘텐츠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매칭을 결정함
- e나라도움, 자부담금, 미술콘텐츠 비용 지급 등 행정 전반은 전시공간 제공자가 부담하며, 전시기획 /설치/철수/부대프로그램 등은 전시콘텐츠 제공자가 진행함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최대 2개의 각기 다른 전시공간 제공자와 매칭 가능
- 전시공간 제공자는 최대 2개의 각기 다른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매칭 가능

• (저시 운영기간)

- 전시는 설치·철수·휴관 등 제외, 주말을 포함하여 연속 30일 이상 운영 필수

• (전시장 지킴이)

- 전시 개최기간 동안 전시공간 제공자는 전시장 지킴이를 배치하여야 하며, 내부인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하며, 외부자 고용 시에만 지급 가능

• (자부담금)

- 전시공간 제공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용해야 함.
- 신청 국고보조금 대비 10%이며, 잔액 없이 100% 완전 소진을 필수로 함.